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 추가〉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56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부연월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 추가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사업)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초급 및 중견 군 간부들의 전역하는 연령이 통상 20대 중반부터 40대여서 전역 이후에도 취업과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방전직교육원이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지원교육, 취업정보 제공, 취업상담, 취업역량 강화 및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전역 이후의 취업경쟁력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활동지원사업(2026년 예산 148억 9,100만원)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구직희망자 취업률은 2018년 46.6%에서 2024년 41.6%으로 6년만에 약 5.0%p는 하락하여 전역자들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구직희망자 취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2	2024
취업률	46.6	46.0	41.8	40.7	41.6

*주: 2022년부터 전직교육원의 취업활동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평가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표와 구직희망자 취업률을 기재하지는 않음. 다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업률을 산출하면, 2024년은 41.6%임.

*자료: 국방부 제출

□ 이처럼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구직희망자의 취업률 개선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전역 이후 취업·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군 복무 중 습득한 직무능력이 민간의 직무·자격체계와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장기간 군 복무로 민간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와 구직 경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군 간부들이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법정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군인공제회 회원의 취업·창업 역량을 높이고 전역 이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취업·창업 지원 사업이 군인공제회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업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군인공제회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

취업·창업 지원은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등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제도의 운영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취업교육·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군인공제회의 법정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공제회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기존 사업체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전역예정군인의 전직지원 교육과 취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방전직교육원이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초급·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전직지원 전문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취업·창업 지원 사업이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역한 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군인공제회의 설립 목적 및 기존 사업체계와의 정합성, 국방전직교육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